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등〉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 | 3 |
| 2.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 8 |



## I. 제안경위

1.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12. 31.
3. 회부일 : 2026. 1.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 Ⅲ. 검토의견

#### 1.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 개정안은 대통령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 및 처리 규정 등 현행법의 주요 의무와 제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생략)<br>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br>가. ~ 라. (생략)<br><u>&lt;신설&gt;</u><br><br>3. 4. (생략) | 제2조(정의) -----<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br>-----.<br>가. ~ 라. (현행과 같음)<br>마. 「 <u>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대통령당선인</u><br>3. 4.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조제2호1)는 ①공무원, ②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④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금품등의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sup>2)</sup>시키고 있음.

한편, 대통령당선인은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출되나, 취임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sup>3)</sup>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성가현, 「특검 "김건희, 영부인 지위로 금품수수·공천개입"...180일 수사 종료」, 이데일리, 2025.12.29.

○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sup>4)</sup>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지명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나,<sup>5)</sup> 대통령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함.<sup>6)</sup>

---

[(중략) 김 특검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야 한다”며 “영부인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뒤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략)]

-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의제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개정안은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sup>7)</sup>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위험을 예방하고, 법 적용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이해됨.

□ 다만, 대통령당선인은 특정한 신분을 취득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나,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고, 공무원에 상응하는 보수도 받지 않음.

□ 한편, 현행법은 공무원 외에도 공무수행사인<sup>8)</sup>,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적 기능 수행자와 사립학교교원 및 언론인

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8)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포섭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율대상을 형식적 신분보다는 ‘직무의 공공성’과 ‘사실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통령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책임과 청렴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 동 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대통령당선인 및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실태 및 심각성, 국민 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 2.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sup>9)</sup>는 공직자등의 금품등<sup>10)</sup>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함.
-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벌칙) ① ~ ④ (생략)<br><br><신설> | 제2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br><br>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제반 규정을 두고 있음.<sup>11)</sup>

□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사실을 안 경우 신고 및 반환·거부 의무를 부여함.<sup>12)</sup>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이와 같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신고·반환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sup>13)</sup>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등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사유를 부여’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sup>14)</sup>한 바 있음.

□ 그런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및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3)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과정(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3월 3일)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부 위원의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을 우회해서 어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함.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 이와 같이 현행법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배우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하고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거나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 제8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제8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

#### <현행법의 공직자등 금품수수 등 관련 처벌 규정>

| 처벌 대상                                                                                                                                                                                                                                               | 처벌 조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 제8조제1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u>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li> </ul> </li> </ul> <p>※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 제8조제2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직무와 관련하여</u>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li> </ul> </li> </ul> <p>※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조제5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u>과태료</u></li> </ul> </li> </ul> |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직무수행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① 공직자등과 같이 현행법 제8조 제4항 중 '제1항 관련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현행법 제8조제4항 중 '제2항 관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②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게는 공직자등보다 약한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책 규정이 부재한바, 공직자등과 같이 배우자가 반환·인도한 경우 면책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sup>15)</sup>

개정안 제22조제5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2호는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수정이 필요함.

---

15) 개정안은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면책규정은 불요함.

□ 둘째, 개정안은 직무수행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수행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공직자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국가 기관이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실태 및 심각성, 국민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110 |